

第306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2年2月27日(月)

場 所 行政安全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

(13시54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국회 제1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박기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기춘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장 박기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소위 계류 중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해서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해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및 교섭단체의 행정보조요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지상파방송사가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先東 委員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先東 委員 전남 순천 지역구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서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안되지 않고, 지금 교사·공무원들이 실제로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사·공무원들에게도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서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일부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에게 10만 원 세액공제를 우리는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사·공무원에게는 10만 원 세액공제조차도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우리 국회가 고쳐서 교사·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위원, 의견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金先東 委員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아, 이의.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소수의견으로 달아 놓으면 돼요.

○위원장 이경재 예, 그러면 소수의견에 달겠습니다.

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4시02분)

○위원장 이경재 다음 주성영 위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71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위원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이 안건을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3항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성영 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다음 내용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선거당일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제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원양어업, 외항여객운송사업,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선한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2013년도 재·보궐선거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부재자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영사가 국내 법원이나 검사의 의뢰를 받아 공판에서 재외선거사범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영사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에 출석한 재외선거사범 등을 국내에서 원격 조사하는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기관의 자료보관 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출구조사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선거결과 예측을 위하여 출구조사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m 밖'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일곱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3 대 1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선거구를 분구하고 세종특별자치 선거구를 신설하여 총 3개의 지역선거구를 증설하였고……

(장내 소란)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선거구를 분할하여 담양군은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와, 곡성군은 순천시 선거구와, 구례군은 광양시 선거구와 각각 통합하도록 하고 경남 남해군하동군 선거구는 사천시 선거구와 통합하도록 하여 2개의 지역선거구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지 않도록 경기도 이천시여주군 선거구 중 이천시를 단독선거구로 하고 여주군을 양평군가평군 선거구와 통합하도록 구역변경을 하며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

인구,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수원시 권선구·팔달구 선거구 등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구 조정에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정수는 246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54인으로 하고 제19대 국회에 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하여 국회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하도록 하며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감안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 및 준의결기관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환 위원님!

○성윤환 위원 이런 소란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 크게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판에 수도권 선거구를 늘리면서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구를 그대로 존치하고 농촌지역구를 없애자는 것은 정당성도 적법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선거구 확정하고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기준은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최소인구 1, 최대인구 3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확정돼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최소선거구 인원은 십만 삼천몇백 명입니다. 최대선거구는 21만 명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최소선거구 인구를 넘어서는 지역을 폐구하고 도시지역의 합구해야 될 5개구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21만을 넘지 않아서 합구해야 되는 지역을 합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도 정당성과 적법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참담하다는 심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金先東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예, 김선동 위원님.

○金先東 委員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의견 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성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지역구를 희생하고 그것을 수도권에 있는 도시지역에다가 주는 것은 정말로 사회정의상도 맞지 않고 또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에서 볼 때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1988년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구수가 현재까지 91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나 이번 선거부터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줌으로 해서 유권자 수가 23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합하면 115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년 동안 299석을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를 많이 본받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 OECD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9만 명에 그치고 많은 경우에도 10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구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가 2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2배나 많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 국회의원정수 증가에 대한, 증원에 대한 반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지역구가 불가피하게 세 곳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응당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례대표도 올려야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서 지역구 의석이 늘어난 만큼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3석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의원 정수의 1%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

서 저는 오늘 자료에도 있는, 농어촌선거구지키기추진위원회에서 뜻을 모아서 제출한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들이 술선수범해서 희생하고 양보함으로써 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즉 1%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대신에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5% 삭감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302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지금 여상규 의원께서 저토록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는데 저것이 비단 여상규 의원 개인의 절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산업화·공업화되어 오면서, 도시화되어 오면서 계속해서 차별되고 소외되었던 농어촌의 우리 주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회가 그러한 정말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로 몰려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 대변자도 잃어가고 있는 농어촌 우리 주민들,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것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되 정말 우리 국민 앞에 떳떳하게 302석으로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좌관의 급여는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세비를 5% 인하한다든지 적절한 규모를 사무처에서 정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선거권 즉 참정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 2011년 12월 6일 날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천공점자 선거공보로 개정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는 것을 헤아려서 가지고 오늘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점자형 선거공보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 공보 페이지가 만약에 8페이지면 이것을 점자로 하게 되면 8페이지가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페이지 제한에 걸려서 8페이지 안에서 하려면 내용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쪽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 공보물에 있는 내용 전체를 접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 주는 것이 장애인들의 정당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선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근찬 위원님!

○**류근찬 위원** 류근찬입니다.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보령·서천, 서천·보령 출신입니다.

결국 선거를 44일 앞두고 우리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불행스럽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 동료 의원 한 분이 자신의 선거구 위상과 관련해서 저렇게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참 착잡한 감정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우리 국회에 권고한 안을 무시한 채 각 당이,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각각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안을 가지고 협상을 벌여왔고 일부 결론이 남으로써 생긴…… 원인을 제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윤환 위원님 그 다음에 김선동 위원님도 말씀 계셨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획정위원회가 우리에게 권고한 안의 통합지역구는 대부분 도시 주변입니다. 도시 주변인데 느닷없이 그 안과 전혀 상관없이 농촌지역 중심으로 통합안을 지금 두 당이 간사 협의를 통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지금 이 안건을 올려놓고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는 획정위원회 안을 정개특위가 무시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정개특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파주·세종시,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담양·구례·곡성을 인접지역구에 통합하고 또 남해·하동을 사천에 통합하는 이 통합안은 아까 두 분 위원님들 말씀 계셨다시피 농촌지역의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문제와 연결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농촌지역 선거구를 도시지역 선거구보다 우선해서 통합하면 과연 농촌에서 국회의원을 언제까지 뽑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15년쯤 뒤부터는 국회가…… 농촌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두 지역, 농촌지역을 인접지역에 통합하는 이 안은 원칙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도 않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분구 대상지역에 특히 충청남도 천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분구 대상지역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줄이는 선거구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국 천안을 선거구 문제가 도외시되고 희생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인데 더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 구·시·군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조정해서 인접구에 붙이지 못하도록 한 그 규정을 고쳐서까지 분구를 원천적으로 앗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개특위가 입법권을 남용한 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분구도 거의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력히 항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천안을 분구가 무산된 데 대해서 심한 유감과 함께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恩宰 委員**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정치개혁 특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구역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안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여상규 의원님께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러면 농촌지역구는 계속해서 도시하고 통폐합이 되든지 농촌만의 선거구는 점차 없어지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경기도 기흥구의 경우는,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는 사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원주시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좀…… 굉장히 많은 유감을 표시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 기흥구에 대한

분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기흥에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현실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시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주가 양평과 가평과 붙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인구 등등도 경계조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든지 아니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을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전문위원……

○성윤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재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성윤환 위원 한 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성윤환 위원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3 대 1 기준으로 봤을 때 1의 기준을 오버해서 충족했다면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남해·하동은 1의 기준을 오버했었고 현재도 오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역시에 있는 몇 개 구, 다섯 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3의 기준을 넘어서서 반으로 쪼개서 두 개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역시의 구 인구가 줄어들어서 3의 기준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쪼개진 것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남해·하동을 없앤다는 것은 농촌지역구에 대한 부당한, 편파적인 예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파적인 대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문제에 관해서도……

○주성영 위원 자기가 남해·하동 추천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하노!

○성윤환 위원 무슨 추천을 해요?

○위원장 이경재 아니, 주 위원……

○주성영 위원 에이, 진짜로 그렇게 살지 마요.

○위원장 이경재 나중에…… 하여튼 주성영 위

원님 소위원장으로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정치를 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지.

○성윤환 위원 무슨 얘기에요?

○박기춘 위원 간사한테 위임해서 했으면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경재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주성영 위원 자기 것 확보되니까 딴 소리 하고……

○위원장 이경재 발언권 얻어 가지고 질문하세요. 답변하세요.

주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성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박기춘 위원 제가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이경재 예, 박기춘 위원님.

○박기춘 위원 예, 박기춘 위원입니다.

우선 모든 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구 획정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농촌지역구를 말하자면 합구하자고 하는 데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농촌지역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가져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100%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그 정당을 대표해서 협상을 해 오는 것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국회법에 따른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부하고 협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것은 자당의 몫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많은 데서 분구를 했으면 작은 데서 합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억울한 거는 민주당입니다.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지금 자꾸 어떤 위원님은 천안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천안정개특위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윤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기춘 위원 자, 들어 보세요, 발언 중에……

○성윤환 위원 제 문제가 아니고……

○박기춘 위원 제가 발언권 받았잖아요.

남양주는 내 지역구지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천안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천안은 국회의원이 3명이 되어야 맞는 거고 남양주는 국회의원이 2명이 되어야 맞는 겁니까? 그렇게 자기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종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가 결코 괜찮다고 생각할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10만도 인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서 세종시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서 세종시의 증설을 합의해 낸 겁니다. 세종시는 충청도지역이라고 동의하시고 천안은 분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된 것 안 했다고 해서 반대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 여주라든지 이천 같은 데는 간사 간에 합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곳을 분구를 안 하면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간사가 심사숙고 끝에 옆의 지역에다가 붙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가 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용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위원회지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여기 나왔습니다만 같이 모여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은 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선거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윤환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기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지역구에 대한 얘기만 자꾸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윤환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박기춘 위원 발언하는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성 위원!

○성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법조인이 정치를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발언하는데 발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윤환 위원 끝나신 줄 알았습니다.

○박기춘 위원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세요, 앞으로.

○성윤환 위원 제가 변명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해 보세요.

○박기춘 위원 아니, 그만 주세요. 나도 마음속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정당인으로서 내가 동의하는 거지 개인 박기춘으로는 나도 반대예요.

○성윤환 위원 다만 제가 이거를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박기춘 위원 여기서 이기성 발언 하는 거예요, 지금?

○성윤환 위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 우리 당에 농촌지역구 국회의원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가 말을 해야겠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마저 못 하게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기춘 위원 내가 말 막는 것은 성 위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을 하니깐 막는 겁니다, 제 발언 중에.

○위원장 이경재 자, 이 정도 합시다.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先東 委員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김 위원, 내가 한 번 딱 얘기할게. 가만 있어, 오케이? 내 말 한번 들어 줘요. 내 말 한 번만 딱 들어 줘.

○金先東 委員 알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경재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의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위

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여 관련 규칙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 등 관련기관은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성동	金先東	김혜성	류근찬
박기춘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유일호	이경재	이은재	주성영
진영	최규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원탁
전문위원	문강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종우
------	-----

【보고사항】

○교섭단체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한나라당	새누리당	2012. 2. 14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조경태	박영선	민주통합당	2012.1.25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12. 1. 9 박영선·천정배·박우순·유선호·김동철·안규백·김학재·박주선·안민석·이춘석·주승용·신건·최재성·백원우·우윤근·최영희·이강래 의원 발의)

1월 1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7 원혜영·조영택·조정식·김재윤·김부겸·송민순·김상희·정장선·김동철·이춘석 의원 발의)

1월 3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2012. 1. 31 김재윤·최종원·조경태·송민순·원혜영·이종걸·우제창·이강래·전현희·이성남 의원 발의)

2월 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 발의)

(2012. 2. 6 정옥임·李玲愛·나성린·강승규·김태원·이영애·강석호·김성희·김기현·김성태·박순자 의원 발의)

2월 7일 회부됨

○청원 회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 30 부산 북구 덕천2동 417-26 정백수의 90인으로부터 박민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월 31일 회부됨